



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대학생 식품 조리·판매(대학 축제 등) 관련 식품위생법 준수 안내 및 협조 요청

1. 관련

- 가.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-4171(2022.06.02.) 「식품안전관리 협조요청」
- 나.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-26879(2022.06.14.) 「대학교 축제 관련 식품위생법 준수 안내 협조 요청」
- 다.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-2440(2022.03.07.) 「[중요] 새학기 내 건전한 학생활동 운영을 위한 협조 요청」

2.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, 최근 **대학교 축제** 등에서 **음식점과 같이 식품을 조리·판매하는 행위**에 대한 「식품위생법」 위반 여부 질의 및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.

3. 귀 대학에서는 대학 내 축제 등 행사 추진 시 학생들이 식품위생법을 인지하여 관련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 등 학생 지도에 힘써주시기 바라며, 건전한 대학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식품위생법 관련 지도·안내사항 >

? 「식품위생법」에서는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식품접객업(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 등)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관할 지자체(시·군·구)에 영업신고하여야 합니다.

? 다만, 대학 축제와 같이 한시적인 비영리 친목도모 목적의 경우 영업신고 대상은 아니나, **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,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조리·판매하는 행위, 식중독 환자 등이 발생할 경우 「식품위생법」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, 고발조치 대상**이 될 수 있습니다.

? 특히, 학교내 축제 행사 목적이 아닌 **학교 주변 주민, 관광객(불특정인) 등에게 학교 내에서 음식을 조리·판매하거나,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학교 주변 음식점 영업자 및 학부모 등의 신고로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**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아울러, 해당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[붙임] '시도별 식품위생부서 담당자'에게 문의 (대학 소재지가 소속된 해당 시도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시도별 식품위생부서 담당자 연락처 1부. 끝.

교 육 부 장



고등교육기관전체

주무관

임정화

행정사무관

나대일

대학사제도
과장

전결 2022.6.16.

김태경

협조자

시행 대학사제도과-6315 ((2022.6.16.)) 접수 ()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/ www.moe.go.kr
교육부

전화 044-203-6616 전송 044-203-6485 / ljh@moe.go.kr / 공개

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.